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101
----------	--------

제출년월일 : 2024.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법적 정당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3조)
- 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안 제4조)
- 다. 위원회 운영세칙(안 제5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4. 7. 11.~7. 31.

- 의견제출: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3) 새마포담당관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원안 동의
- 5)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6)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 7) 제1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의결(2024. 8.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 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절차에 따른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감사담당관 이해정
연 락 처	02-3153-8173